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3. 28.
사회건설위원회

1. 審 查 經 過

- 가. 제출일자 : 2007년 3월 19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07년 3월 22일
- 라. 상정일자 : 제12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7년 3월 26일)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 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유 종 상)

가.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에 의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주 요 내 용

-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6)
- 기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회계 관직을 조정함(안 제5조)
-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 의결을 얻도록 함(안 제8조)

3.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的 要 旨 (專 門 委 員 이 남 식)

- 2006.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관련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2007년 우리 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영규모는 3억 8천4백만원임.

4. 審 查 結 課 : 原 案 可 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1
----------	----

제출년월일 : 2007. 3.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에 의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금의 운용·관리 및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4조)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설치 등 규정 신설 (안 제4조의2 내지 안 제4조의6)
- 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의 책임 등 관계 규정 개정 (안 제5조)
- 기금의 결산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8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06. 10. 19. ~ 11. 8.)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 및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제1호중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를 “구”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제3호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전의 동조 본문)중 “관리·운용”을 “운용·관리”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4조 다음에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5 및 제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3.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 변경
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의5(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6(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담당주사가 된다.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청소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소행정담당주사로 한다.

③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다음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금의 결산)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 운용성과 분석 결과 및 복식부기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에서 자치구가 수집한 재활용품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의 자원) 기금의 자원수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생략) <p>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수집한 재활용품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의 자원)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 ----- -----. 2. (현행과 같음) <p>제3조(기금의 용도)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같음) 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 <p>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p> <p><신 설> ②기금은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p> <p><신 설> ③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p> <p><신 설> 제4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3.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p>④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⑤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신 설>	<p>제4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p> <p>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신 설>	<p>제4조의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 변경 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신 설> 제4조의5(위원회의 운영)</p> <p>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p> <p>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신 설> 제4조의6(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담당주사가 된다.</p> <p>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u>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u>을 둔다.</p> <p>②기금출납명령관은 도시관리국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청소과장으로 한다.</p> <p>③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p>	<p>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 ----- <u>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u> -----.</p> <p>②기금운용관은 청소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p> <p>③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p> <p>①구청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8조(기금의 운용계획)</p> <p>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p> <p>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p> <p>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②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신 설></p>	<p>제8조의2(기금의 결산)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 운용성과 분석 결과 및 복식부기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p>	<p>제9조(준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p>
<p><신 설></p>	<p>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